
Policy and Law Report _Vol.10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1.1~ 11.7) -

November 8,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10월까지의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4분기 재정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남은 11~12월 기간 동안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경제회복세 보강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함 재정집행 중점 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소비·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예산과 사회기반시설(SOC) 등 정부 직접투자 사업 분야에 집행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2021-11-02
	항목	사업비	내용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원	10/27부터 온라인을 통해 나흘간 14만명(신청자 35.4만명의 39.6%)에게 0.5조원 지급(10.30일 기준) 11/3부터 방문신청도 가능	
	② 상생소비 지원금	0.7조원	10월중 1,488만명의 신청을 받아 10/29까지 캐시백 3,025억원(가집계*) 발생 11/15 일괄 지급 예정	
	③ 9대 소비쿠폰	예산잔액 2,300억원	방역상황 악화로 중단('20.11월)되었던 여행·공연 등 9대 소비쿠폰을 금년 11월부터 대면사용 전면 재개	
	④ 재정지원 일자리	33.5조원	24개 부처 180개 사업, 9월말 기준 26.9조원(80.4%) 집행 10~12월 동안 6.6조원 추가 집행	
	⑤ 고용유지 지원금	1.9조원	10월말 기준 4만개사(32.2만명)에 1.1조원(61.1%) 지급	
	⑥ R&D 출연금	22.5조원	- 총 1,012개 세부사업(관리대상), 9월말 기준 21.0조원(93.4%) 집행 - 연말까지 1.5조원 추가 집행	
	⑦ 민간 자본보조	2.3조원	- 총 123개 세부사업(관리대상), 9월말 기준 1.6조원(69.7%) 집행 - 연말까지 0.7조원 추가 집행	

부처	내용				일시
	⑧ 민간 투자사업	3.5조원	- 철도·도로 등 72개 사업, 9월말 기준 3.1조원(88.9%) 집행 - 연말까지 0.4조원 추가 집행		
	⑨ 한국판 뉴딜	2.8조원	분기까지 18.7조원(82%) 집행	*디지털 뉴딜 6.8조원 (88%), 그린 6.9조원 (84%), 휴먼 5.1조원 (73%)	
	⑩ SOC	25.7조원	- 총 928개 세부사업(관리대상 기준), 9월말 기준 20.2조원(78.6%) 집행 - 연말까지 5.5조원 추가 집행		
	⑪ 생활 SOC	11.0조원	- 총 142개 세부사업(관리대상 기준), 9월말 기준 8.8조원(80.0%) 집행 - 연말까지 2.2조원 추가 집행		
	⑫ 자산취득	14.8조원	- 총 1,863개 세부사업, 9월말 기준 9.2조원(61.9%) 집행 - 연말까지 5.6조원 추가 집행		
기획재정부	•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판 뉴딜 자문단 디지털뉴딜 분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뉴딜 추진 현황’과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변화될 사회’ 등을 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디지털뉴딜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함 디지털 경제의 주요 변화 양상을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2.0을 통해 초연결·초지능·초실감 시대를 이끌 ICT 융합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메타버스·블록체인·클라우드·지능형로봇 등 6개 핵심 육성분야에 ‘25년까지 마중물 재정 투자로 총 2.6조원을 투입하여 성장 기반 조성 ② VR·AR,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육성하여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신산업 확산을 위한 법·제도 정비로 통해 기업이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③ 범부처 협의체인 ‘신산업 전략지원 TF’를 통해 민간과 긴밀히 소통하여 신산업 육성분야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마련 등이 있음				2021-11-02

부처	내용	일시										
보건 복지부	• 백신·치료제 기업 지원을 위해 범정부 지원정책 및 mRNA백신 특허분석 안내 보건복지부와 특허청은 「백신· 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안내서)」 및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마련함 「백신· 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은 케이(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관련 범정부 지원 정책(73개 사업)에 대하여, 백신· 원부자재 및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중인 기업·연구기관 등에게 상세히 알리고자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되었고, 「mRNA 특허분석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발간됨 ① 「백신· 치료제 지원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으로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관련 지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 등이 있음 < 주요 지원 사업 > <table><tr><th>구분</th><th>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th></tr><tr><td>차세대 백신 개발</td><td> · 신· 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 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123억 원) 및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지원(56억 원)('22년 신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미래감염병기술개발(331억 원) 및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13억 원) ·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 원) ·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22년 신규) 및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생산 등 지원('22년 신규, 167억 원) · 글로벌 임상3상 등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 백신 특허전략 지원(22억원)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21.6~) </td></tr><tr><td>생산역량 확충</td><td> · 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14억 원, '24년부터 단계적 지원) ·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신규, 69억 원) · 백신 개발· 생산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21. 下~'24년) ·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5억 원) 및 컨설팅 등 지원 · 백신 등 분야 투자지역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td></tr><tr><td>국산백신 글로벌 진출</td><td> ·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2년 139억 원) </td></tr><tr><td>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td><td> · 바이오 공정인력, 의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 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560억 원) </td></tr></table> ② 「mRNA 특허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6월까지 공개된 특허를 대상으로 코로나19 mRNA 백신 관련 플랫폼 기술,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싱 현황 및 국내진입 여부 분석 등이 있음	구분	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차세대 백신 개발	· 신· 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 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123억 원) 및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지원(56억 원)('22년 신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미래감염병기술개발(331억 원) 및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13억 원) ·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 원) ·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22년 신규) 및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생산 등 지원('22년 신규, 167억 원) · 글로벌 임상3상 등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 백신 특허전략 지원(22억원)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21.6~)	생산역량 확충	· 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14억 원, '24년부터 단계적 지원) ·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신규, 69억 원) · 백신 개발· 생산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21. 下~'24년) ·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5억 원) 및 컨설팅 등 지원 · 백신 등 분야 투자지역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산백신 글로벌 진출	·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2년 139억 원)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 공정인력, 의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 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560억 원)	2021-11-02
	구분	주요 사업('22년 예산, 정부안)										
차세대 백신 개발	· 신· 변종 감염병 대응 mRNA백신 비임상· 임상시험('22년 신규, 164억 원) ·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123억 원) 및 신속· 범용 백신 기술개발 지원(56억 원)('22년 신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미래감염병기술개발(331억 원) 및 플랫폼 핵심기술개발(113억 원) · 차세대 백신 기초· 원천 핵심기술개발('22년 신규, 100억 원) ·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22년 신규) 및 스마트 임상시험 시스템 구축('21~'22년) · 백신실증지원센터 활용, 공정개발 및 (비)임상시료 생산 등 지원('22년 신규, 167억 원) · 글로벌 임상3상 등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조성('22년 신규) · 백신 특허전략 지원(22억원) 및 코로나19 백신 신기술 특허출원 우선심사('21.6~)											
생산역량 확충	· mRNA 백신 공정개발 등 실증지원기반 구축(14억 원, '24년부터 단계적 지원) · mRNA백신 핵심 원부자재 및 대량생산공정 등 기술개발(신규, 69억 원) · 백신 개발· 생산 핵심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하여 세제지원 강화('21. 下~'24년) · 의약품 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25억 원) 및 컨설팅 등 지원 · 백신 등 분야 투자지역 첨단투자지구 지정('21.9~)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											
국산백신 글로벌 진출	· 아시아개발은행(ADB) 민간금융 지원제도 활용 지원 · 백신 관련 기업 간 매칭 플랫폼인 COVAX 마켓플레이스 활용('21년~) · 단기수출보험 지원한도 확대(최대 2배) 및 수출기반보험 지원 · 해외기업과의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22년 139억 원)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 바이오 공정인력, 의과학자, 감염병 및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 확충('23년부터 오픈랩 운영 예정) · 백신 생산 기업과 함께 민· 관 공동 백신펀드 조성('22년 신규) ·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분야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560억 원)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2022.5.3. 시행 예정)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 (제14조제4항) -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②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③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④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별표 2 비고1])] -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2021-11-02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u>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u>」(2021.11.2. 시행)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신고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생활숙박시설의 분양 광고에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분양계약서에도 분양받은 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에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1-02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영향평가법 제정안」 해양 이용·개발이 증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 해양생태계 훼손가능성 및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양자원, 해양에너지, 해양관광 등 해양 이용·개발 시 사전 및 사후관리정책으로서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현실임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1999년 「해양오염방지법」에 해역이용협의가 실시되고, 2007년 「해양환경관리법」 제정 시 해역이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서 해역이용협의와 해역이용영향평가라는 틀로 발전되어 왔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만이 아닌 해양환경에 대한 다른 내용이 이와 함께 있어 국민이 찾아서 알고 이행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제도의 틀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넘어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현행 제도 부분을 분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함으로써, 점차 다양화·대형화되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이용의 적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대한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양환경영향협의 체계 정비 및 고도화 (안 제10조부터 안 제22조) - 제도의 취지·역할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을 해역이용협의에서 해양환경영향협의로 하고 그 대상을 규정함 (안 제10조) - 해양환경영향협의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협의서 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협의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 등을 명문화함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 - 해양환경영향협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 ② 해양환경영향평가 체계 정비 및 고도화 (안 제23조부터 안 제36조) -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사회 갈등 조정에 효과성을 더 높이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을 조정함 (안 제23조) - 사회갈등이 심각히 우려되어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 기관을 지정하여 해양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공탁제를 도입함 (안 제24조)	2021-11-0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 수산부	- 해양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해양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송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초안 검토의견 및 이해관계자 의견 선별·반영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제출 및 협의 요청 → 해양환경영향평가서 검토 → 협의의견 회신’으로 명확화하는 등 핵심 절차를 명문화함 (안 제25조부터 안 제31조) - 해양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의견 반영, 재협의, 사전공사 금지,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을 규정함 (안 제32조부터 안 제36조) ③ 해양환경영향평가업 제도 정비 (안 제37조부터 안 제46조) - 기존 제도가 국민에게 더 쉽게 다가가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함 (안 제37조) - 해양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해양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관련 준수사항, 권리·의무 승계, 업무의 폐업·휴업, 등록취소, 행정처분의 효과 승계, 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 작성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8조부터 안 제46조) ④ 보칙 (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 -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해 및 심해저에서 이루어지는 해양 이용·개발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근거를 마련함 (안 제47조) -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 공개 및 그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안 제49조) - 해양환경영향협의 및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의 민간협회인 해양환경영향평가협회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 후 설립할 수 있음 (안 제51조) ⑤ 벌칙 (안 제55조부터 안 제57조) - 해양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 위반 시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함 ※ 의견제시기간 : 11/1(월)~12/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해양보전과)로 제출	2021-11-0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 관리 기준을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 대상 업무 추가 (안 제15조)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업무에 관한 사무를 추가 ② 의무사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기준 신설 (안 별표 2)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그 외 과태료 감경, 가중 기준 명확화 ※ 의견제시기간 : 11/4(목)~12/1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로 제출	2021-11-04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45호, 2021. 8. 17. 공포, 2023. 1. 1. 시행)됨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중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고, 닭·오리 식육의 생산연월일도 금지 대상으로 명확히 하여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한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제외 대상 중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시기간 : 11/5(금)~12/15(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공정거래위원회	•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2021년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40조 제1항 제9호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업자 간 정보를 주고받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0조 제5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제9호 후단 제외, 이하 같음)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것을 합의 추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설 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기준, 관련 사례 등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법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보를 ‘주고받는’ (이하 ‘정보교환’이라 함)의 의미 규정 -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정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하되, 불특정다수가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공개·공표하는 경우는 제외함 ②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 방식 - 사업자 간 정보교환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는 경우 그 합의는 위법함 - 정보교환 합의는 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 성립하며, 사업자 상호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도 성립함 - 정보교환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가격의 공동인상 및 점유율의 안정화 등 시장상황, 독과점 정도 등 시장의 구조와 상품의 동질성 여부,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의 시제·공개여부 등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 기간·횟수 등 교환행위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경쟁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교환 합의가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아니함 ③ 법 제40조 제5항 제2호의 해석 방식 -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여 사업자 간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있고, 외형상 일치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사업자들이 제40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추정하며, 사업자들은 이를 복멸할 수 있음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는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및 변동시점, 경쟁변수 변동에 따른 구매대체의 정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2021-11-0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여부는 교환된 정보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인지 여부, 정보가 교환된 시점,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외형상 일치의 내용 간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사업자들은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행위 심사기준」에 따름 ⑤ 이 지침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 의견제시기간 : 11/3(수)~11/2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총괄과)로 제출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등 10인)」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 센터를 마련하는 등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신설)	2021-11-02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이용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 가상자산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이용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함 (안 제2조) ②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안 제46조의3) ③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안 제46조의4) ④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여함 (안 제46조의5) ⑤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상자산이용자와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안 제46조의6 및 제46조의7) ⑥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매매등의 안전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46조의8) ⑦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 (안 제46조의9) ⑧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금세탁행위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함 (안 제46조의10부터 제46조의13까지)	2021-11-0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9인)」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하도급대금 조정방법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하도급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원자재 기준가격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② 서면으로 정한 바에 따라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16조의2제9항 신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5조제1항)	2021-11-03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1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 중립’을 실효성 있게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와 동일하게 저율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산업 부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그 공제율이 1퍼센트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투자에 대한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2021-11-0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공제율을 3퍼센트 등으로 상향함으로써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을 도모하고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환경과 산업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9인)」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 등의 개인 투자 예약금이 '18년도 24.8조 원에서 '20년도 65.5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개인의 여유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대부분은 안정적 수익을 고려한 대기업 등에 대한 주식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신동력 생산을 위한 벤처 투자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효과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더해 최근의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투자처로서의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관심이 고조되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2018년도 4.8조원에서 2020년도 6.6조원으로 35.5% 상승하였음. 이를 활용해 벤처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개인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신동력을 활성화하며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임 (안 제16조제1항)	2021-11-02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 등 12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통신인프라 위에서 제공되는 만큼 통신인프라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실제로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에 걸친 통신장애로 국민들의 불편은 매우 컸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 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1-1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용약관 신고 시에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8조제6항 신설) ②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자동 요금 반환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33조의2 신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계획 및 절차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 33조의3 신설) ④ 이용자는 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 (안 33조의4 신설) ⑤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을 금지행위에 포함함 (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⑥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 발생 시 방통위는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면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제2항 신설)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중소유통업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1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발전대책을 수립하고 대·중·소 유통업간의 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한편,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사업협력모델 발굴을 통한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물류일괄처리(풀필먼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간의 협업과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소기업업을 유통산업의 주체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혁신촉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국가는 중소기업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 구조개선과 사업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한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함 (안 제3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 등을 위한 지원으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지원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함 (안 제5조)	2021-10-2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소기업육성 혁신촉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함(안 제6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육성의 촉진에 관한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안 제7조)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 또는 중소기업이 물류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8조)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단체가 중소기업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9인)」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0년 말 대비 올해 공급원가가 26.4%나 상승했음에도, 이를 납품대금에 전부 반영한 중소기업은 6.2%에 불과함 이처럼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기준가격 및 납품대금 조정 방법을 기재한 표준약정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거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021-1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납품대금에서 원자재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위탁기업은 주요 원자재 기준가격을 정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방법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함 (안 제21조제2항 신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약정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도록 함 (안 제21조제3항 신설) ③ 원자재 기준가격이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함 (안 제22조제7항 신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22조제8항 신설 및 제43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신청을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의 등록을 거부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재해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지수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35년부터 시·도지사는 내연기관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5호의2 신설)	2021-11-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이 법의 적용 요건을 마련하고,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기준 및 대기기간 연장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안 제10조의2제3항 신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②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수급자격 인정 (안 제43조의2 신설) -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하여 그 피보험자격을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으로 모두 상실한 사람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함 ③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의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안 제46조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 안 제77조의3제6항 및 제77조의8제6항) -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해당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후 다시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의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액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종전에는 최대 7일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되는 경우 등에는 최대 4주를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 기준 마련 (안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제77조의6제2항제3호 신설) -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2021-11-03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1/12(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3호 발간	
국회도서관	11/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7호 발간 - NFT의 가상자산 적용 논의에 관한 해외 입법동향	
	11/9(화)	「현안, 외국에선?」 제23호 발간 - 미 육군의 다영역작전(Multi-Domain Operations):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	
	11/10(목) 10:00	‘온라인시대, 죽어가던 상점도 혁신한다’ 세미나 개최 - 리테일테크(Retail Tech 또는 R-Tech) 사례 - 황지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교수 등 3인	온라인
	11/12(금) 11:30	제18차 「밥 대신 지식강좌」 실시 - 메타버스 속의 나는 누구인가?	온라인
입법조사처	11/8(월)	「NARS 현안분석」 -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소방안전 강화방안	
	11/8(월)	「NARS 입법 · 정책」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11/9(화) 14: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22년 북한의 대내외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온라인
	11/12(금) 10:00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행정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부혁신 방안 모색(정치와 행정의 조화)	온라인
	주중	「이슈와 논점」 - RCEP의 농업 부문 영향평가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예결위	11/8(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종합정책질의 2일차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부별심사-경제부처 1일차
	11/10(수)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차
	11/11(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비경제부처 1일차
	11/12(금)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비경제부처 2일차
운영위	11/10(수)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법사위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9(화) 16:00	전체회의	타위법 심사
	11/11(목)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2(금)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정무위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0(수)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1(목)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1(목) 본회의직후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
기재위	11/8(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9(화)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0(수)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1(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교육위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0(수)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2(금)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과방위	11/9(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상정, KBS사장 인사청문 관련 안건 의결 등
외통위	11/11(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국방위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1(목)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2(금)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행안위	11/9(화) 15: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1(목)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2(금)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문체위	11/9(화)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0(수)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1(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
농해수위	11/8(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등
산자위	11/8(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9(화) 14: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0(수) 10: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1(목) 1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의결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복지위	11/11(목) 09: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상정
	11/12(금) 09:00	예결산소위	2022년도 예산안 등 심사
	11/12(금) 20: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등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9(화) 07:30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연속세미나 - 신국제질서와 대한민국 외교의 방향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국 외교	김한정, 김경협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11/9(화) 10:00	산재예방 예산 및 대안마련 전문가 정책 세미나 - 중소기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은?	권영세 의원실	한국노총 대회의실
11/9(화) 14: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박완주, 이학영, 이원욱 의원실	서울가든 호텔 2층
11/11(목) 13:30	미래융합 인재상 논의포럼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원욱, 조해진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08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예산정책처	주중	「2021~2030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파일첨부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을 제시	
입법조사처	11/1(월)	「NARS 현안분석」 제216호 발간 -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11/2(화)	「NARS 현안분석」 제217호 발간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2(화) 14:00	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 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변재일 의원실, (사)국회물포럼	서울대학교 (ZOOM)
11/3(수) 10:00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인력·예산·직제· 검사처우를 중심으로)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실 외	중소기업 중앙회 혁신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